

2025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보육을 위한 거점시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그린바이오 산업 :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
 - * 6대 유망분야 :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
-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유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23.02)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4.01~)

□ 지원 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나)} 또는 예비창업자^{다)}

가)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 확인서 제출 필수

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 창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 팝업/배너/공지사항 확인 ▶ 신고 구비서류 준비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나.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첨부서류 >

가. 기업 신고서(직인 날인) ☞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개인사업자)

나. 기업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서류) 및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26년 말 준공) 입주 희망 기업

-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중 경북 포항에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입주 가능한 기업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후, 6개월 이내 입주

※ (필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의무기간(수혜기간과 동일)이 있으며 불이행시,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제한될 수 있음.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치 및 조감도 >



1.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위치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포항지식산업센터 인근)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24.06.)

2.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층별 구성 및 입주공간

- 1층: 다목적실(대강당), 체력단련실, 메이커스페이스, 생산지원실, 회의실 등

- 2층: 입주사무실(8), 연구시설(공동실험실, 분석기기실, 공동기기실, 미생물실험실 등)

- 3층: 입주사무실(7), 화상 회의실, 네트워킹 카페, 바이오키친, 전문기관 입주실 등

※ 4인실(약 33㎡/9개소), 6인실(약 50㎡/2개소), 8인실(약 67㎡/3개소), 12인실(82㎡/1개소)

※ 2025년 기준, 포항지식산업센터 임대료 : ㎡당 2,940원(공용면적 및 관리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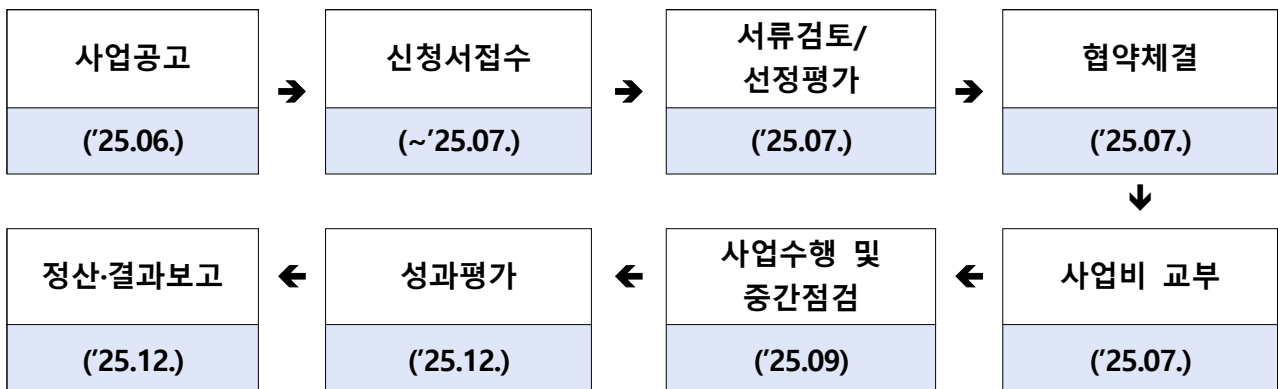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 지원 방식 : 직접지원(사업 전용 계좌로 현금지급 / 민간부담금 입금 필수)

지원 범위 및 내용	선정기업수	보조금
<그린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 - 그린바이오 6대 유망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 그린바이오 소재 품질 및 유효능 평가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생산 및 품질인증 - 기업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 시설장비 사용료 등 <그린바이오 글로벌 파트너링> - 그린바이오 국제 교류행사 수출박람회,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참석 지원(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비, 국제운송료, 홍보영상 제작 등) ※ 단, 해외 출장의 항공료는 민간부담.	15개사 내외	최대 55백만원 /기업

- ※ 지원 규모(사업비/지원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총 지원기간은 2025년~2029년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및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 총사업비(지방보조금+민간부담금) 20% 이상 민간부담(단,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며, 민간부담금의 구성 중 10%는 현금 부담 필수.
- ※ 지원 범위(중복) 및 내용은 기업의 자율 선택이며, 사업계획서에 내용 명시 할 것.

□ 추진 절차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25.06.30.(월). ~ 2025.07.15.(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 우편/방문 접수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

※ 사업등록 기간 內, 전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문 의 처 : (재)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박동규 전임연구원, 054-262-4215, kei@ptp.or.kr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1)
	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양식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3)
	4.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양식4)
	5.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입주 협약서	(양식5)
	6.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예비 창업기업은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8. 기업재무제표(2022년~2024년)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예비창업자의 경우, 생략가능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3개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최근 3년간 고용인원 증빙서류(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1. 사실증명원(총사업자 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폐업사실증명원)	
	12. 그린바이오기업 신청서	
선택	13.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고문 內, 가점사항의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 신청제한

-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기관에서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의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평가 및 선정

□ 입주기업 선정평가 개요

- (서류검토)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검토(서류 누락, 제외대상 등)
 - ※ 제출서류 부적합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비중은 서류평가 30%, 발표평가 70%의 비중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함
 -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사업책임자)의 구두 발표로 진행함(발표10분, 질의5분)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공지 예정(PPT형식, 원본파일 1부/사본 7부 제출)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
 - 동점 발생 시, 발표평가 성적 우수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며, 심사항목(사업계획 ▶ 기술성 및 사업성 ▶ 성장가능성 ▶ 기업역량)의 순으로 선정함

□ 평가 및 선정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홍보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포항TP	~7.15
수혜기업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서류 및 발표평가) • 수혜기업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 	포항TP, 선정위원회	7월중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 협약 체결 추진 	포항TP ↔ 선정기업	7월중
지원과제 수행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포항TP : 수혜기업 모니터링 및 점검 	선정기업	8월~
지원 과제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수행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포항TP	11월~ 12월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기업 고용 및 매출 등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포항TP ↔ 선정기업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선정평가 기준

○ 서류평가 기준(30% 반영)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제출서류 적정성 (10)	1. 제출서류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참고자료(별첨)의 적합성 등	10
사업계획 적정성 (60)	1.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15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	30
	3. 예산 계획의 합리성 - 예산의 세부내역 구성 및 산출 근거의 타당성	15
정책 부합성 (10)	1. 국내외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 정책 부합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5
	2. 해당 분야 산업 및 학술적 기여도 - 기술적,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5
성장 가능성 (20)	1. 기업 성장 가능성 - 매출 및 투자,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기업 성장 가능성 2. 기술 및 제품 고도화 가능성 -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 고도화 가능성	20
합 계		100

○ 발표평가 기준(70% 반영)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행역량 및 전문성 (20)	1. 관련 분야 기술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사업추진 역량 - 내부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및 수준 - 인력 구성의 적절성, 사업화 성공 경험(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10
	2.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선행연구 등	1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50)	1.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10
	2.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등	30
	3.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예산 세부내역의 적절성 및 자부담 자금조달 계획 등	10
차별성 및 우수성 (15)	1. 개발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 기술의 이해도,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목표기술 및 제품개발의 차별성 및 독창성,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기술개발 또는 구현의 가능성 등, 기술의 확장성 등	15
	2. 개발제품의 차별성 및 상용화 가능성 - 개발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및 예상 시장 점유율(시장규모)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등	
사업화 전략 (15)	1. 사업화 전략 -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사업화 전략 - 지식재산권(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확보 및 상용화 전략 2. 기술고도화 전략 :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 3. 국제협력 전략 : 공동기술개발, 인력교류, 판로개척 등	15
합 계		100

□ 가점 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류평가 시 최대 5점 부여
 - ※ 가점 총합이 5점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으로 한정함.
 - ※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항 목	가점	내 용	증빙 서류
창업기업	1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노비즈	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투자유치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0억 이상의 투자유치실적	투자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인정서
여성기업	1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소재지	1	본사의 소재지가 경북도 내에 위치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우수기업인증	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신기술인증서(NET)
	1	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	신제품인증서(NEP)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신기술인증 등)에 따른 신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따른 신제품 보유기업

□ 입주기업 최종 선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 선정
 - ※ 종합점수는 서류평가 30%, 발표평가 70%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협약체결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 입주시기

- 입주시기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완공(26년 말) 후, 6개월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포항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결정
 - ※ 건축 추진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예정.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부담금(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포항시 또는 (재)포항테크노파크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입주기업은 입주기업 부담금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납부하여야 함
 - ※ 2025년 포항지식산업센터 면적당 임대료 : m²당 2,940원.(공용면적 및 관리비 별도)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완공 후, 입주기업 모집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한 수혜기업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됨

5. 의무 사항

□ 수혜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부분을 입금하고, 사업비 교부시 통장사본 및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하여, 자부담 부분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 ②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선정기업이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 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사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음
- ※ 예비 창업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 및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 제출.
- 입주 사무실은 신청된 규모(실)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사무실이 초과 신청된 경우에는 종합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함
-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간 중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서 중도 퇴거 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 보증 기호는 ‘협약지원금’,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종료일 + 3개월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비 교부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일 이후 사업비 ‘사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제출 및 승인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통장은 기업명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함. 또한,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 사업비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승인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변경 시, 비목 간 변경은 ‘승인성’, 비목 내 세목 변경은 ‘통보성’ 으로 진행하며, 승인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승인하에 집행 가능함.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변경은 승인성, 통보성 모두 공문으로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 기간, 참여율 변경도 동일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함.

별첨 1 그린바이오 산업 및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일부 발췌 (2023.02.)

□ (개념)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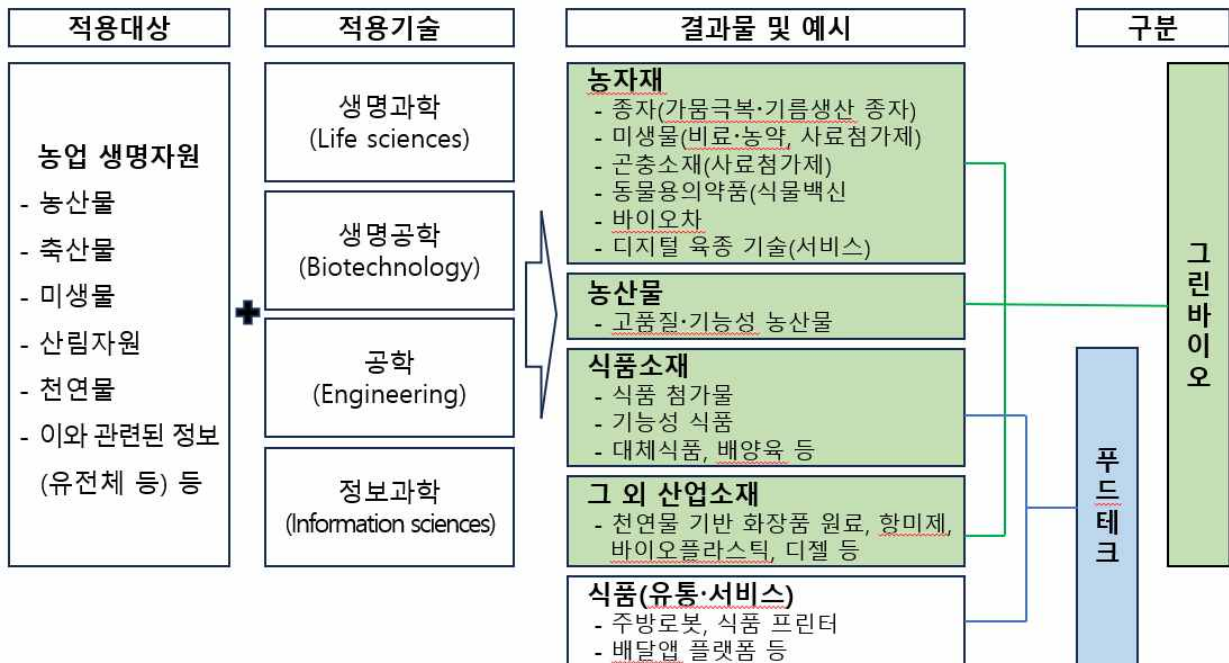
*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및 이와 관련된 정보(유전체 등) 등



□ (범위) ①농자재, ②기능성농산물, ③식품소재 및 ④그외 산업소재로 구분 가능
 ○ 종자(디지털육종 기술 기반),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소재, 동물용의약품(식물백신), 기능성·대체식품, 산업소재(천연물)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 동물용의약품, 종자, 미생물, 곤충, 식품, 천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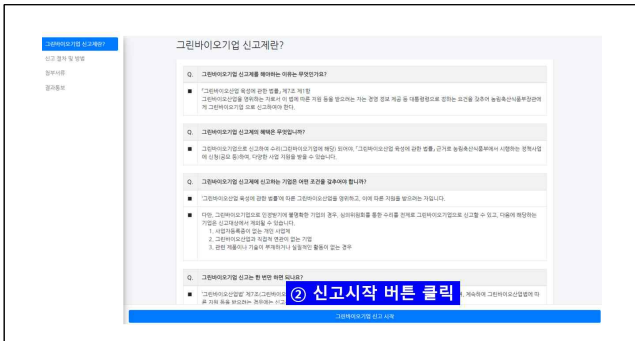


별첨 2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1. www.koat.or.kr 접속 및 배너 클릭



2.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시작



3. 기업체 정보 입력



4. 신고서 작성/업로드

